

제규정관리규정(3-1-2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,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운용,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계속적, 반복적 효과를 가진 체계적인 규범적 문서로서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, 시행세칙, 요강 및 내규로 구분한다.

1. 규정 : 법령 및 정관,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조직과 교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 (개정 2005.11.23)
2. 시행세칙 : 규정에 준거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
3. 요강 :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
4. 내규 : 외부에 공시하여서는 안될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부분적인 업무를 정한 체계적인 규범문서
5. 예규 :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의 설명 및 해석을 한 문서

제3조(적용범위) 제 규정의 운용, 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제정형식) ① 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총칙(목적, 정의, 적용범위)
2. 본칙(각 조문의 명칭)
3. 부칙(시행일자 등)

② 제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전 항의 요소를 구비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항목 구분은 편, 장, 절, 조, 항, 호의 순서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폐합,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2. 사용문자는 한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외국문자를 ()내에 사용할 수 있다.
3. 서식, 도표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효력)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② 일반적으로 상위법·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.

제6조(입안절차) ①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입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하며 이를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 규정의 입안 또는 제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업무소관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제규정심의위원회)(개정 2005.11.23)① 규정의 제정 및 폐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(개정 2007.3.5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제정 또는 폐입의 필요성
2. 용어의 적부
3. 타 규정과 관련성
4. 중복 및 불필요한 사항의 삭제, 조정 또는 추가
5. 기타 제규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제정 및 폐입) ① 기획처장은 규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. 다만, 규정안의 내용과 형식 등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이나 요강, 내규, 예규의 제정, 폐입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(개정 2005.11.23, 2007.3.5)

② 전항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(개정 2005.11.23)

제9조(주관부서) 제 규정 제정, 폐입, 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(개정 2007.3.5)

제10조(대장등재)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세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규정대장에 등재한다. (별지 2호 서식)

제11조(규정가제) 제정 및 개정된 제 규정은 인쇄하여 년1회 구 규정과 교체, 가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규정집) 규정, 세칙 등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제규정집을 편집, 발간하여 배포한다.

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규 정 입 안 서

1. 부 서 명 :
2. 규 정 명 칭 :
3. 제정(개정)사유 :
4. 주 요 내 용 :

첨 부 : 1. 규정(개정)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관련부서 의견서 1부.

기획처장 귀 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규 정 대 장					
일련번호	규정번호	규 정 명	결재일자	시행일자	비 고